

#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유정희 의원 외 27명
- 의안번호 : 제2790호
- 발의일자 : 2021년 10월 15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20일

### 2. 제 안 이 유

- 현행 가로수 점검시기가 매년 11월이나 이 시기에는 수목의 월동시작시기 (낙과, 낙엽 등)로서 생육상태에 대한 관찰이 어려우므로 잎과 꽃 등의 생육관찰이 가능한 매년 5월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수목 생육관찰을 하고 이 시기에는 동절기 염화칼슘의 피해여부도 관찰가능하며, 생육이상 수목점검 결과를 통해 여름철 태풍 대비에도 용이하여 변경하고자 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가로수 정기점검 시기를 매년 5월로 변경함(안 제16조제3항)

#### 4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참조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별도 첨부)

## 5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 재 효)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11월로 되어있는 가로수 정기점검 시기를 5월로 변경하려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‘가로수 정기점검’은 동 조례 제16조(점검)제3항에 따라 매년 11월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최근 5년간의 푸른도시국 가로수 정기점검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‘정기점검1’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11월에는 가로수 통계관리와 수시점검만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
- 반면, 매년 5월에서 6월 중 ‘여름철 가로수·녹지대 풍수해 재해대책’을 수립하면서 가로수 점검을 이와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.

풍수해 재해대책은 서울시 및 자치구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 가로수 동공발생, 기울어짐 위험도 등 사전점검<sup>2)</sup>을 통해 예방작업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

- 따라서 안 제16조제3항과 같이 가로수 정기점검 시기를 매년 5월로 변경, ‘풍수해 재해대책’과 병행하여 확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, 특히 이 시기에는 겨울철을 지난 수목들의 생육상태 확인과 가로수 제설재 피해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1) 제16조(점검) ① 관리청은 노선별·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점검대상은 바뀌심기를 요하는 가로수, 병충해의 감염여부,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,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.<개정 2009.3.18>

③ 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한다.

2) 2021년 가로수·풍수해 재해대책 사전점검 실시 (2021. 5. 21. ~ 6. 18.(4주간))

- 관리청 자체점검: 5. 20. ~ 6. 11.(3주간), - 시·구 합동점검 : ‘21. 6. 14. ~ 6. 18.(1주간)